

2019년 3월 입주희망자 BK생활관 입주 신청 안내

- 본 안내문은 2019년 3월 입주 희망자 대상으로 하는 안내문입니다.
- 모든 입주 신청자는 반드시 안내문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. 안내문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▶ 입주 신청 기간 : 2019.1.1.(화) ~ 2019.1.31.(목)

※ 기준: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, 대학원생 및 연구생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

▶ 입주 자격 및 절차

| 구분 | | 교원 | 연구원 | 대학원생, 연구생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|--|
| 국적별 입주신청자격 | 외국인 | (총장발령) 전임 및 비전임 | 총장발령 자 |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2인이 거주할 경우 |
| | 내국인 | (총장발령) - 전임교원 - 전일제 비전임 교원* | 총장발령 자 | 해당 없음 |
| 건물유형별 입주신청자격 | A동 (가족실, 56.26㎡) |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,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경우 | | 해당 없음 |
| | B동 (스튜디오, 23.02㎡) | 단독 거주 or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가능(자녀 거주 불가) | | 법률혼인 상태의 배우자와 거주 (단독 거주 및 자녀 거주 불가) |
| 신청 제한 | | ① 「서울대학교 학생생활관 규정」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서울에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있는 자 ③ 입주예정일이 BK관 직전 퇴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 ④ 대학원생에 한하여 관악생활관의 가족생활관 또는 BK생활관 거주 경험이 있는 자 ⑤ 교원 및 연구원에 한하여 관리위원회 심의에 의해 사용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⑥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BK관 최소 입주 기간인 3개월 이내에 퇴거한 경험이 있는 자 | | |
| 신청/선발/등록 절차 | | 소속기관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공문으로 신청 ↓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 ↓ 입주 대상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입주 날짜 예약 및 생활관비 계좌 납부, 입주 등록 서류 작성, 입주안내 받은 후 입주 | |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주신청 ↓ 소속기관 담당자 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↓ 우선순위에 따라 소속기관에 대기번호 및 입주 대상자 통보 ↓ 입주 대상자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에 입주 날짜 예약 및 생활관비 계좌 납부, 입주 등록 서류 작성, 입주안내 받은 후 입주 |
| 신청 기간 | | 입주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 해당 월 1일부터 말일까지 ※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, 대학원생(연구생)의 경우 소속 | | |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| 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 *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 |
| 발표 일시 및 방법 | 입주 신청 마감일 후 대기자 및 선정자 통보(공문발송) * 선발 순서(대기번호)는 발표하는 월의 말일 까지 유효함 |
| 입주 허가 기간 |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2년 (교원 및 연구원은 임용기간 유지 시, 대학원생(연구생)은 학적 유지 시) * 거주 연장 기간은 운영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이내 연장 가능 - 대학원생 1회, 교원 최대 총 거주 기간 7년, 연구원 총 거주 기간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|

* 비전임 교원 구분(근거: 서울대학교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)

- 전일제: 강의교원, 연구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
- 비전일제: 겸임교원, 외래교원
- 전일제 또는 비전일제: 초빙교원, 객원교원

▶ 구비 서류

| 구분 | 외국인 | 내국인 |
|--------------|--|---|
| 교원/ 연구원 | <p>신청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③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(해당자만)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, 가족의 여권 사본 <p>* A동 신청자와, B동에 배우자와 함께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의 여권사본 필요</p> <p>입주시(붙임1 참조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강진단서 (필수 항목: 흉부 X-ray 검사)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| <p>신청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③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- 서울시 재산세 여부 포함 필수 (서울시에 본인과 배우자에게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) ④ 주민등록등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월 이내 발급분 - 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⑤ (초빙/객원 교원만 해당)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서 제출(소속기관 직인 포함) <p>입주시(붙임1 참조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강진단서 (필수 항목: 흉부 X-ray 검사)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|
| 대학원생/ 연구생 | <p>신청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BK생활관 신청서 ②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, 배우자의 여권 사본 ④ (해당자만)배우자가 본교 학생인 경우, 신분확인을 위해 관련 증명서 <p>입주시(붙임1 참조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건강진단서 (필수 항목: 흉부 X-ray 검사) ②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| 해당 없음 |

*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

* 외국인의 경우 'SNU Health Form'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(병원 직인/서명 필요)

▶ 생활관비 및 합증료

(단위: 원)

| 구분 | A동(가족실) | | | | B동(스튜디오) | | | |
|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| 관리비 | 보증금 | 합증료 | | 관리비 | 보증금 | 합증료 | |
| | | | 3년 초과 4년 이하 (20%) | 4년 초과 (40%) | | | 3년 초과 4년 이하 (20%) | 4년 초과 (40%) |
| 금액 | 630,000 | 1,890,000 | 126,000 | 252,000 | 398,000 | 1,194,000 | 79,600 | 159,200 |

▶ 유의사항

1. 신청

- 1) 학생신분은 본인과 배우자 2인이 B동(스튜디오)에 거주 할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, 동반 가족사항에 배우자 정보를 입력해야함.(A동을 신청하거나 법적배우자 정보 기록이 없을 경우 입주신청취소)
- 2) 대학원생의 경우 단과대 승인 담당자가 '구비서류-외국인 대학원생/연구생-신청시'에 해당하는 서류 확인 후 승인(서류 원본은 관악학생생활관 BK생활관 담당자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)
- 3) 포털 계정이 아직 없을 경우, 먼저 아이디(ID)를 신청한 후 로그인해야 함
- 4) 공문접수 시 기관장 최종결재로 발송 요망
- 5) 신청일자는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공문 도착 일시, 대학원생 및 연구생의 경우 소속기관 담당자 승인 일시 기준

2. 입주 자격 상실

- 1) 지정된 기한 내에 서류 제출과 관리비 납부를 모두 완료하지 않을 경우,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, **입주 자격 상실**
- 2) 서류 제출 시, 위장전입 또는 입주자격, 동반거주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된 경우 **입주 자격 상실**
- 3) 입주 후 생활관에 거주하는 동안 퇴거대상자 관련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자진 퇴거해야 하며 적발 시 즉시 강제 퇴거 조치됨
- 4) 호실 무단양도 및 대리입주로 적발될 경우, 즉시 강제 퇴거 조치됨

3. 상황별 제출 서류

1) 신청 시

가. 외국인 대학원생(연구생 포함)이 B동(스튜디오)을 신청할 경우

- BK생활관 신청서 +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+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+ 배우자의 여권 사본 + (해당자) 배우자의 재학관련 증명서

나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A동(가족실)을 신청할 경우

- BK생활관 신청서 +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+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+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+ 가족의 여권 사본

다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(스튜디오)을 배우자와 같이 거주할 경우

- BK생활관 신청서 +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+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 + 가족관계증명서 or 결혼증명서 + 가족의 여권 사본

라. 외국인 교원 및 연구원이 B동(스튜디오)을 단독 거주할 경우

- BK생활관 신청서 + 임용예정확인서 or 임용공문 + 본인의 여권 or 외국인등록증 사본

마. 내국인 교원 및 연구원

- BK생활관 신청서 +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+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+ 주민등록등본(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

바. 내국인 교원 중 초빙교원, 객원교원의 경우

- BK생활관 신청서 + 임용공문 or 임용예정확인서 + 세목별 과세(납세) 증명서+ 주민등록등본(본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등본상 미기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) + 소속기관의 전일제 교원 증명서 제출(소속기관 직인 포함)

2) 입주 시

가. 제출서류

- 건강진단서(필수 항목: 흉부 X-ray 검사)
- 홍역예방접종 증명서

나. 유의사항

-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관련 상세 안내 사항은 붙임 1 참조
- 건강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
- 사용허가서 작성 시(입주 시)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 자격 상실
- 외국인의 경우 'Seoul National University Health Form'을 의료기관에서 확인 받은 후 제출 가능 (병원 직인 필요)

▣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학생생활관 행정실(전화 02-881-9038)로 문의 바랍니다.

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

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안내

1. 건강진단서 관련 안내

- 진단서 유효 여부
 - “진단서”, “건강진단서”로 발급받아야 함
 - 결과서, 소견서, 통보서, 확인서 등 제출 불가
 - 보건소, 종합병원, 내과에서 발급한 진단서로, 기관명칭, 기관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
 - 종합 판정란 정상자에 한해 입주 가능
 -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
- 검진 항목
 - 결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 X-ray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 - 의료 기관별 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사항목이 다를 수 있음(필요 검진 항목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판단하여 결정함)
- 진단서 유효기간 : **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**

2. 홍역예방접종 증명서(홍역 면역력 여부 검사) 관련 안내

- 홍역예방접종 증명서 발급
 -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(nip.cdc.go.kr)에서 발급하는 ‘예방접종증명서’ 출력
 - 국문 또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만 유효
- 접종 사실 확인 (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만 유효함)

| 구분 | 제출 서류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홍역 접종 사실이 확인된 경우 | ‘예방접종증명서’ 제출 |
| 접종 사실은 있으나 내역이 검색되지 않을 경우 | 항체 검사를 실시한 후 ‘홍역항체검사 결과서’ 제출 ※ 접종한 병원을 알고 있는 경우,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‘홍역예방접종 확인서’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|
| 접종 사실이 없는 경우(미접종자) | 홍역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‘홍역예방접종 확인서’ 제출 ※ 미접종자의 경우 서류제출 기간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접종 사실을 확인 받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|

3. SNU Health Form 작성 방법(외국인)

외국인이 한국에서 건강진단서 및 홍역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기 어려울 경우, Health Form으로 대체 가능

- 1) 필수 검진 항목: 1번 항목 중 Measles와 2번 항목 중 PPD 또는 Chest X-ray는 반드시 포함
- 2) 유의사항
 - Health Form은 병원기관에서 작성 후 병원기관의 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, 직인을 받아야 함
 - 결핵 검사는 입주기준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검사 결과만 유효